

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

1) 조 례 안 : 별첨

2) 조례안 예고 : 2021. 6. 9. ~ 2021. 6. 13.

의안 번호	제 2627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6월 7일

발 의 자 : 정순희 의원

찬 성 자 : 오진환, 정택진, 윤인숙,
조진호, 임준희, 이인락,
이재식, 임정옥 의원 (8명)

1. 제안이유

저출산 위기 시대에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등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 - 「건강가정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
- 라. 기 타

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정”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·양육·보호·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세대원 중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.
3. “다자녀가정 우대카드”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·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

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우대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,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우대 및 지원중단)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7호 중 “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”을 삭제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5호 중 “세자녀”를 “두자녀”로 한다.

관계법령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